

해외건설협회와 거주한인건설협회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

해외건설협회(이하 '해건협')와 거주한인건설협회(이하 '거주건협', 해건협과 함께 '양 기관'이라 한다)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수주 확대 지원과 양 기관의 상호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우리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수주확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 기관간 정보교류 등 상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협력내용)

양 기관은 아래 항목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며, 구체적 이행을 위해 수시 협의회 개최를 통해 협력사항을 발굴 및 모니터링 한다.

- ① 미국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 및 수주 관련 정보 교류 등
 - 해건협은 거주건협의 요청시 회원사의 미국 내 관심 프로젝트 및 수주 정보를 거주건협에 제공한다.
 - 거주건협은 해건협의 요청시 미국 시장 발주정보 등 수주관련 정보를 해건협에 제공하고, 진출 관심 기업 앞 컨설팅(TV/벤더리스트 제공, 법무/세무별인 소개 등) 서비스 제공한다.
- ②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협력
 - 양 기관이 개최하는 세미나 및 수주지원단에 초청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.
 - 양 기관이 상대방의 사무소 소재지에 출장/파견시 사무실, 회의실 이용 등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.
 - 양 기관의 업무연수과정에 상대방 소속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.
- ③ 기타 상호 협력사항
 - 양 기관은 상기 협력사항 이외에도 업무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하여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.

제3조 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아니한다.

제4조 (비용부담)

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5조 (협의 책임자)

본 협약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기관별로 협의책임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 (해석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의 조문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7조 (기한)

본 협약서는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,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기간에 관한 통보가 없으면 매년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제8조 (기타)

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,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제2조(협력내용)에 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.

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18년 7월 2일



가주한인건설협회
회장 정재경



가주한인건설협회
CA KOREAN CONSTRUCTION ASSOCIATION
SINCE 1982



해외건설협회
회장 박기풍



해외건설협회
International Contractors
Association of Korea